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 1. ~ 3. (생략) 4. <u>기업어음증권(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),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(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. 이하 “어음”이라 한다)</u> 5. ~ 10. (생략) ② (생략)	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 1. ~ 3. (생략) <u>4. 양도성 예금증서</u> 5. ~ 10. (생략) ② (생략)
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1. ~3. (생략) 4. <u>어음</u>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 이하로 한다. 5. ~ 10. (생략)	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1. ~3. (생략) 4. <u>양도성예금증서</u>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 이하로 한다. 5. ~ 10. (생략)
<신설>	<u>부칙</u> 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3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.</u>